이 사 회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 11조에 열거된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직원의 직무집행의 타당성 및 위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④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

제3조의2 (대표이사의 임기)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총 이사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정관 제 35 조에서 정한 대행순서
2. 기타비상무이사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매 사업년도 최초의 정기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후 지체 없이 개최하고, 그 이후의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2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이사회 소집권자의 지정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주의 발행과 증자
11. 자기 주식의 소각
12.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중간배당
14.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6. 사채의 모집
17.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18.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0. 이사의 경업 승인
21.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2.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3.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2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 및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25.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시 사항
27.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안건의 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의 변경
2.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3.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경영전부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5. 이사, 감사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9. 주식의 분할

나. 주주총회 일반결의 사항

1. 재무제표의 승인
2. 이사와 감사의 선임
3. 이사와 감사 보수의 결정
4. 주식 배당 결정
5. 법정준비금의 감액

다. 주주총회 특수결의 사항(주주 전원 동의)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3.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4. 법규에 반하는 중간배당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감면
5.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6.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7.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라.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연간 사업의 계획과 경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소송의 제기
4.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 계획
5. 해외증권의 발행
6.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담보제공
7. 기부금의 공여
8. 이사회 규정 개정
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나. 임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급 결정

다.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라.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경영진이라 함은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을 말하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사록)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비치. 보존한다. 의장은 제 17 조 이사회 지원조직의 책임자로 하여금 의사록의 작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17 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2009. 11 . 1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11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